

2021 긴급복지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- 법적근거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
- 목 적 :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
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 대처 및 해소
- 지원대상
 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• 단전된 때
 -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 -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(노숙기간 6개월 미만)
 -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
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 -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단, 5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
 - ①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, ②최저임금*60시간 이상 소득 여부
 - ③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
 - ④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
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
 - ⑤ 무급휴직 중인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제출
 -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
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급격히 감소한 경우
 - 단, 4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
 - ①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 지속하고 있는 경우
 - ②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년 1월, 19년도 동월 또는 20년도 동월에 비해
25%이상 감소한 경우
 - ③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
 - ④-㉓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VAN사, 카드사 또는 POS(핸드폰
사진, 화면 캡처, 인쇄물 등)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제출시
-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(용역계약서 등)

○ 선정기준 : 3가지 요건 모두 충족
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~100% 이하

(단위: 원/월)

기준 \ 가구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1 긴급복지지원	1,370,873	2,316,059	2,987,963	3,657,218	4,318,030	4,971,452
※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51,446원씩 증가						

- 재산기준(일반재산+금융재산+보험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-부채) : 11,800만원 이하

※ 단,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으로 2021년 6월말까지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- 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
○ 지원 내용 및 기간

구 분		지 원 내 용						최대횟수	
현금 · 현물 지원	생계지원	•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(단위: 원)						6회 (1회 원칙)	
		가 족 구성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	6인
		2021 지원금액	474,600	802,000	1,035,000	1,266,900	1,496,700	1,722,100	
현금 · 현물 지원	의료지원	• 수술,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비 • 300만원 이내 지원 ※ 제외: 간병비, 의료기구 구입비, 제증명료, 보호자식대, 비급여 입원료·식대						2회 (1회 원칙)	
	교육지원	• 초등학생 221,600원/ 중학생 352,700원 • 고등학생 432,200원/ 수업료, 입학금(해당 학교장 고지 금액)						1회	
	주거지원	•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지원 (단위: 원)						12회 (1회 원칙)	
		가구구성원 수 지 역	1~2 인	3~4인	5~6인				
		중 소 도 시	290,300	422,900	557,400				
	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	•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(단위: 원)						6회 (1회 원칙)	
		입소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	6인
		지원금액	535,900	914,200	1,182,900	1,450,500	1,719,200	1,987,700	
	기타 지원	•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98,000원 이내 • 해산비 700,000원, 장제비 800,000원 • 전기요금 500,000원 이내						1회	